

한의학교육실 운영 규정

제정 2021. 07. 15.

제1조(총칙)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7조(단과대학) 제4항의 한의학교육실(이하 “교육실” 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한의학 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
- ②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발, 개편 및 평가
- ③ 강의계획과 신교육기법, 교수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④ 한의과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습법 프로그램 운영
- ⑤ 기초종합시험, 임상종합시험, 임상술기평가(OSCE, CPX 등)의 시행
- ⑥ 졸업역량 평가결과의 분석 및 피드백
- ⑦ 한의과대학의 CBT(Computer Based Test, 이하 “CBT” 라 함)시행 및 운영체제 관리
- ⑧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⑨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조(조직) ① 교육실의 실장(이하 “교육실장” 이라 한다)은 한의과대학 소속 일반교원으로 서 한의과대학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교육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교육실에는 필요에 따라 산하에 부서를 둘 수 있다.
- ④ 교육실에는 한의학 교육과정의 수립, 운영, 평가와 교수법, 학습법을 전담하는 교육학 전공자인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⑤ 교육실에는 CBT운영체제 관리를 위해 유관 전공자를 직원으로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교육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은 교육실장, 한의학과 학과장, 한의예과 학과장, 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을 당연직 4인으로 하고,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육실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한의학 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
 2.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발, 개편 및 평가
 3. 강의계획과 신교육기법, 교수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 4. 한의과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습법 프로그램 운영
 5. 기초종합시험, 임상종합시험, 임상술기평가(OSCE, CPX 등)의 시행
 6. 졸업역량 평가결과의 분석 및 피드백

7. 한의과대학의 CBT시행 및 운영체제 관리
8.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9. 교육실 운영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10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예산) 교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도록 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411, 2021.07.15)

이 규정은 202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